

**Vol. 8**

2023.08. 14.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217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송주황전임 jhsong@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며,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마련 등(제2조제19호 및 제25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전자상거래 급증에 따라 전자상거래 형태에 적합한 전용 통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탁송품이나 우편물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수출입통관 및 검사제도 등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특수관계자의 과세 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제3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 및 제277조 제1항)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신고가격 불인정 사유로 과세가격 결정자료 및 증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를 추가하고, 세관장의 시정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과세가격 결정자료 외에도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을 포함시켜 의무 위반 제재 대상을 확대함.
여행자 휴대품 자진 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제96조제2항)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경감액의 한도를 종전의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 완화 (제106조제1항 및 제106조의2제1항제1호)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을 재수출하는 경우 종전에는 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 환급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할 수 있도록 환급 요건을 완화함.

(3) 시행일

'23.07.01.

I. 법령 개정사항

2.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수출입기업 등의 급부·지원 신청 시 납세자 동의에 기반한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관세청장이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 등을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에게 주문·결제 등과 관련한 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관계자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자료와 관련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동의 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제공정보의 범위, 통신판매업자의 정보 제공 방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표 기준을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 공표 기준 조정(제16조의2제3항제1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의 공표료는 원활한 물자수급 및 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효과 달성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분화된 기준으로 수입물품 평균 신고가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의 확대 (제261조제4호의2 신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편물로 수출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등을 수출입신고대상에 추가함.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간이세율 체계 개편(안 별표 2)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가격 합산 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던 단일간이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그 폐지에 따른 세액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함.
특수관계자의 증명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마련 (안 별표 5 제4호, 안 별표 6 신설)	특수관계자가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거짓제출의 경우와 동일하게 자료의 종류별로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시행일

'23.07.01.

I. 법령 개정사항

3.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에 추가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일반과세자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실내 도서열람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26조 제1항제8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대여 용역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유사한 용역인 실내에서 도서를 열람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35조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종전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간이과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63조 제4항 신설)	일반과세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여 간이과세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활성화를 도모함.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 명령 등(제75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2호 신설)	신통상업자의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가 대행·중개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등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정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시행일

'23.07.01.

I. 법령 개정사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등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제71조의2제3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사유(제72조제4항)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발급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예외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매입세액공제 대상 확대(제75조제9호 사목 신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하나 이를 납세자의 착오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23.07.01.

I. 법령 개정사항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발전용 연료인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 연장 (개별소비세법 제2조의2)	제 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 라목, 같은 항 제 5 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 단서 중 "2023년 6월 30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3) 시행일

'23.07.01.

I. 법령 개정사항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도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외국통화의 매매·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주자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본거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거래금액 기준을 '미화 2 만달러 이하'에서 '미화 5 만달러 이하'로 확대하는 등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제18조제4항제4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증권금융회사"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2만달러"를 "5만달러"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25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너목	과태료 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30px; margin: 10px auto; text-align: center;">200만원</div>

(3) 시행일

'23.07.04.

I. 법령 개정사항

7.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5 퍼센트에서 0 퍼센트로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함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나프타’에 대한 0.5 퍼센트의 조정관세를 폐지하여 0 퍼센트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0.5% 조정관세를 폐지하여 0% 기본세율 적용 (별표 3)	2710란, 2710.1란, 2710.12란 및 2710.20란을 각각 삭제한다.

(3) 시행일

’23.07.06.

I. 법령 개정사항

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관세법」 제 71 조제 1 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을 0.5 퍼센트에서 0 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0.5% 할당관세를 폐지하여 0% 기본세율 적용 (별표 6)	2709.00의 세율(%)란 중 “0.5”를 “0”으로 한다.

(3) 시행일

'23.07.06.

I. 법령 개정사항

9.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 개정 이유

「베트남·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640 호, 2017. 11. 29. 공포·시행)의 유효기간이 2022년 11월 28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 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의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공급국	공급자	덤핑방지관세율(%)
베트남	엔알엠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2.30
	그 밖의 공급자	
인도	안자니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1.04
	마이탄과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인드실 에너지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인드실 하이드로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몰텍스와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그 밖의 공급자	

(3) 시행일

'23.07.21.

---

## I. 법령 개정사항

### 1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신호변환기, 금속분말 흡입 거름 장비 및 소규모 생물배양기 등을 추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전원공급기, 포집기 및 동결 건조기 등은 제외하여 총 46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2) 주요 내용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1 의 2], 법 제 90 조 제 1 항 제 4 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총 46 개 품목 지정

#### (3) 시행일

'23.07.28.

I. 법령 개정사항

11.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중 전체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등 거주기간 요건 완화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을 탄력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예시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양식을 이사자 등 작성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여 작성 시 혼동을 방지하고 정확한 신고 유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이사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사자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제3조)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6개월) 이상 거주한 후 입국하는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은 관세 면제 가능(「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현행</th> <th>개정</th> </tr> </thead> <tbody> <tr> <td>거주기간 계산 기준</td> <td>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td> <td>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td> </tr> <tr> <td rowspan="2">추가 적용 기준</td> <td>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td> <td>삭제</td> </tr> <tr> <td>-</td> <td>일시귀국 사유·기간을 고려하여 일시귀국 기간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가능</td> </tr> </tbody> </table>		현행	개정	거주기간 계산 기준	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	추가 적용 기준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	삭제	-
	현행	개정									
거주기간 계산 기준	최초 출국일자부터 최종 입국일자까지의 기간	외국으로 거주를 이전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									
추가 적용 기준	외국 거주기간의 2/3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	삭제									
	-	일시귀국 사유·기간을 고려하여 일시귀국 기간도 외국 거주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가능									
관세가 면제되는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예시 삭제(별표 1)	소비 대중화로 그랜드피아노, 영사기 등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반영하여 이러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는 별표1을 삭제하고,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물품의 범위는 ①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②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물품, ③물품의 종류·수량으로 보아 판매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 본문 제4조 단서로 규정										
이사물품 반입내역서 양식을 이사자가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 (별지 제1호서식)	반입내역서 작성 시 이사자의 국적에 따라 거주(예정) 기간을 작성하도록 하여 반입내역서 작성 관련 혼동 최소화										

(3) 시행일자

'23.08.07.

II. 입안예고

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재활용 물품의 원산지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여 FTA 활용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물품은 해당 인증서로 원산지를 간이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고시 적용 대상 서류 및 품목 확대	*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Good Recycled, GR) 제도 - (개요) 탄소감축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우수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 - (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
‘서식 19’ 신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지정(‘서식 19’ 신설)
(‘별표 6’ 신설)	‘재활용 가루 세탁비누’ 등 25개 품목을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적용 대상 품목으로 지정

(3) 의견수렴기간

’23.08.23.

II. 입안예고

2. 「관세법」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사유를 확대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부 등의 보관 의무 내용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의 물품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우회덤핑에 따른 덤핑방지조치의 효과 훼손을 차단하기 위해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안 제2조, 제110조, 제110조제2항 등)	관세법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관세조사의 정의가 납세자 권리현장조항(제110조) 및 통합조사 원칙 조항(제110조의2)에 분산되어 있어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안 제12조)	신고·제출한 자료 대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포함)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안 제21조제1항)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사유에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추가함.
특수관계자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자료 요구 사유 추가(안 제37조의4제1항)	관세조사의 일반정의(관세법 제2조) 신설로 관세조사가 세액심사와 분리됨에 따라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에 기존의 세액심사 외에 관세조사를 추가함.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안 제42조의2제1항)	보정기간 경과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안 제56조의2 신설)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해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우회덤핑에 대해서도 해당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하도록 함.

II. 입안예고

구분	내용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잠정조치에 대한 사후 정산 합리화(안 제53조 제2항·제3항 및 제59조 제2항)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전 잠정조치에 대한 사후 정산의 사유로 해당 잠정조치의 유효기간 종료를 추가하고 정산 시 담보 관련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안 제83조 제1항·2항, 제108조 제2항·3항)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하고, '용도세율 전용물품'은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품목분류 체계의 수정에 대한 의미 명확화 등 품목분류 제도의 개선(안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품목분류체계의 수정은 법 별표 관세율표 및 품목분류표를 수정하는 사항임을 명확화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및 품목분류 변경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관세포탈 등 명단 공개 대상 확대(안 제116조의2)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함.
선상 견본품 반출 절차 마련(안 제161조 제1항·제4항)	하선 전에 수입물품의 검사가 불가피한 경우 보세구역 반입 전이라도 선상에서 견본품을 채취·반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안 제206조 제1항)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에 「국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휴대품을 반입하는 경우를 추가함.
보세운송수단 관련 의무 위반행위 규제(안 제216조, 제277조제5항)	보세운송 신고인이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안 제246조의2 제2항)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을 '검사대상 물품'에서 '포장용기·운반수단 등'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이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함.

(3) 의견수렴기간

'23.08.23.

II. 입안예고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농·어업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안 제12조제2항, 제44조제2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어업인 추가(안 제13조)	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농·어업인까지 확대함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안 제36조의2 신설)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인은 2017.9.23.부터 2020.6.3.까지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 제 2 조 제 1 호에서 규정한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만을 신고납부함.
- 나. 000 청장은 2020.7.6. 처분청에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12.22.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과세전통지를 함.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1. 000 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000 청장은 2021.10.19. AAA 가 제조한 쟁점니코틴으로 생산된 쟁점①물품에 대해서는 불채택하고, 2021.11.12. 청구인에게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 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BBB 가 제조한 쟁점니코틴으로 생산된 쟁점②물품에 대해서는 재조사결정을 하여, 2021.11.15.부터 2021.12.10.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21.12.15. 청구인에게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 원을 경정. 고지하였음.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1. 및 2022.3.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함.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청구인은 극히 이례적으로 담배 대출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출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관리하지 않은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3.05.31. (조심2022관0042)

Ⅲ. 조세심판사례

**2.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

**(1) 주요내용**

- 가. 청구인은 2018.5.14부터 2021.1.4.까지 수동식 적하 및 양하용 장비인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기타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제 8428.90-9000 호로 신고하여 한-000 FTA 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21.1.18. 000 원장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000 원장이 2021.8.3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 제 8479.89-9099 호로 회신하자, 2021.10.29.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 8479 호로 변경하고 한-000 FTA 협정관세율 2.4~4.8%를 적용하여 관세 합계 000 원, 부가가치세 합계 000 원 및 가산세 합계 000 원 총합계 000 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1.17. 및 2022.3.16.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1.12.6. 및 2022.3.24.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및 2022.4.27. 000 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결정요지 : 신청인의 심판청구 기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분류사례가 확인되는 반면 원산지증명서상 기재된 품목분류에 따라 수입신고하였다고 하여 납세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결정일**

2023.05.31. (조심 2022 관 009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Blower FAN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FAN Assembly; YLF1205A-10D-03(DC12V) ② Blower FAN; MYK271(DC24V)
물품 설명	차량의 지붕(roof)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 내부에 결합되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송풍용 팬(fans
HS CODE	- 변경 전 : 제 8414.51-900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8414.59-9000 호 (기본관세 8%)
변경 사유	특정 기계(에어컨 실외기)에 구성품 형태로 들어가는 팬이므로 '기타의 팬'으로 보아 제 8414.59-9000 호로 분류 (제 2023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7.12.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USB HUMIDIFIE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USB HUMIDIFIER ; FT-T1/8509809000
물품 설명	소형 선풍기와 초음파 가습기가 하나로 결합된 USB 충전 방식의 듀얼 선풍기 겸 가습기(무게 209g)
HS CODE	- 변경 전 : 제 8509.80-9000 호 (기본관세 8%) - 변경 후 : 제 8479.89-1090 호 (기본관세 8%)
변경 사유	설계의도나 제품 구조상 '초음파 가습기'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 8479.89-1090 호로 분류 (제 2023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7.12.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Aquaculture Pond Cleaner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Aquaculture Pond Cleaner ; BactaClean-Algae Type1
물품 설명	미생물과 효소, 실리카, 돌로마이트, 부형제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으로 연못이나 호수 등 수질 관리(오염물질 분해)를 위한 수처리제로 사용
HS CODE	- 변경 전 : 제 3002.90-4000 호 (기본 관세: 0%) - 변경 후 : 제 3824.99-9090 호 (기본 관세: 6.5%)
변경 사유	미생물 외에 여러 화합품과 천연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조제품이므로 '따로 분류되는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제 3824.99-9090 호에 분류 (제 2023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7.12.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EATHERSTRIP HOOD 등 2 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WEATHERSTRIP HOOD ; 9455017 ② 86431-D3000 W/STRIP HOOD ;R.KOREA
물품 설명	자동차 보닛 하단에 결합되어 개폐시 충격을 흡수하고 빗물 등이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스트립형상의 연질 고무제품
HS CODE	- 변경 전 : 제 4016.93-0000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제 4016.10-0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가황한 셀룰러 고무(EPDM Sponge)와 기타 합성고무 두 가지 재료가 결합되어 있으나 본질적 특성은 '셀룰러 고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제 4016.10-0000 호로 분류 (제 2023 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7.12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5. Ozone Therapy Apparatus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zone Therapy Apparatus ; ① Twin Nasal Cannula ② Oxygen catheter(PVC) ③ Air-way(PVC)
물품 설명	산소 결핍상태의 환자 콧구멍에 꽂아 산소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얇은 관 형상의 비강 캐놀러(Nasal Cannula)
HS CODE	- 변경 전 : 제 9019.20-2000 호 (기본 관세 0%) - 변경 후 : 제 9019.20-9000 호 (기본 관세 0%)
변경 사유	산소 발생기나 유량계가 없는 얇은 관 형상의 '카테터(캐놀러)'이므로 '산소흡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제 9019.20-9000 호로 분류 (제 2023 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3.07.12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 한·미 FTA 10년의 경제적 성과 분석결과 발표 (KIEP)
- 한·미 FTA의 사회·경제적 의의, 10년 이행결과에 대한 업계·학계 의견 및 그밖에 한·미 FTA 미래 등에 대한 토론

□ (수출)

- 한미FTA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은 연평균 1.5% 증가한 반면, 동기간 對美수출은 연평균 5.5% 증가
- (FTA효과) 연평균 對美 수출 증가분(241.6억불)\* 중 31%(74.9억불)의 수출증가가 FTA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발효 전후 연평균 수출액 : 473.2억불→714.7억불(51.0%) 증가
- (기술수준별 수출) 고기술 산업의 對美 수출은 발효 전('07~'11년) 평균 359억불에서 발효 후('12~'21년) 평균549억불로 52.9% 증가

□ (수입)

- FTA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총수입은 연평균 1.6% 증가한 반면, 對美수입은 5.0% 증가
- (FTA효과) 연평균 對美 수입 증가분(141.0억불)\* 중 34%(47.8억불)의 수입증가\*가 FTA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발효 전후 연평균 수입액 : 381억불→522억불(37.0%) 증가

□ (무역수지)

- FTA 발효 후 10년간('12~'21) 對美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 전 5년('07~'11) 대비 연평균 100억불(93억불→193억불, 109%) 증가

□ (투자)

- 한국의 對美투자는 연평균 77.3억불(46.5억불→123.8억불, 266.2%), 미국의 對韓투자는 12.7억불(5.9억불→18.6억불, 315.2%) 증가
- (FTA효과) FTA 효과는 對美 투자증가분의 32.2%(24.9억불), 對韓 투자증가분의 31.5%(4.0억불)로 추정

□ (경제효과)

- 한·미 FTA는 양국간 교역 증대를 통해 경제성장과 후생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역할
- (성장, 후생) 실질GDP는 발효 후 10년간 1.82%, 소비자후생은 198.3억불 증가
- (생산, 고용) 생산액은 9.9조원, 일자리는 99,929개 창출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2. 베트남과 기술규제 애로사항 논의

- 베트남 기술규제 정보요청 및 의약품 규정 관련 협의
- 제6차 한-베트남 FTA TBT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제6차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를 7월 5일(수) 영상회의로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한-베트남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016년 제1차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개최한 이래 무역기술장벽 완화를 통한 수출 원활화와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TBT)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베트남이 새롭게 도입을 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규제, 전기안전 및 전자파적합성 통합 규정안 등 기술규제의 제정 동향을 확인하고 시행 시기, 세부 규제사항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우수한 국산 의약품이 베트남 시장에 신속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협력을 요청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TBT 핸드북 공동 개발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결과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고,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대(對) 베트남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한-베트남 TBT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 보세제도 통한 세관절차 간소화·물류관리 효율화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세청은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인천 송도국제도시 9공구 일대)를 2023년 7월 12일부로 종합보세구역(37.8만㎡)으로 신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36개 운영 중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수출증대, 국제물류 활성화 등을 위해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이곳에서는 입주업체 등이 관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외국 물품을 반입한 뒤, 보관·전시·판매하거나 이를 원재료로 활용하여 제조·가공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아암물류2단지를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해서 기업 유치를 지원해 왔으며, 현재까지 3개 기업\*이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관세청은 그간의 기업 유치 실적과 예상 물동량 등을 검토하여 이번에 예정지를 정식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보세구역은 전자상거래 업종 특화목적으로 지정되는 전국 최초의 종합보세구역인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종합보세구역에서는 외국 화물을 낱개 상품 단위로 분할 관리할 수 있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 운영 시 세관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인천항만공사가 추진 중인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의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 유치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전자상거래 특화단지 구축되면,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상운송 기반의 국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상운송을 통한 중국발 해외직구 증가, 중·대형 직구물품 증가 등

관세청은 “인천항이 전자상거래 국제 물류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따른 기업 유치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세금부담을 완화해 첨단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23.3월)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4. 2023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 수출 160.6억불, 수입 114.5억불, 무역수지 46.1억불 흑자
- '23년 4월을 기점으로 ICT수출 감소 폭은 점진적 완화 추세 유지

'23년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160.6억불, 수입은 114.5억불, 무역수지는 46.1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되었다.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반도체 업황 부진 지속, 역대 6월 중 최고 실적인 전년 동월(206.0억불)의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1% 감소하였다. 다만, 6월 수출 감소율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4월을 기점으로 수출 감소 폭은 완화되는 추세이다.

※ ICT 수출 감소율(%) : ('23.1) 33.2 → (2) 32.1 → (3) 32.2 → (4) 35.9 → (5) 28.5 → (6) 22.1



품목별로는 반도체(△27.9%), 디스플레이(△11.1%), 휴대폰(△18.8%), 컴퓨터·주변기기(△48.7%), 통신장비(△3.3%)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 포함, △25.7%), 베트남(△11.3%), 미국(△32.6%), 유럽연합(△21.6%), 일본(△10.3%) 등이 감소하였다.

정보통신산업(ICT) 수입액(114.5억불)은 정보통신산업(ICT) 수요 회복 지연에 따른 주요 부품(반도체 등) 수입 감소로 전년 동월(130.5억불) 대비 12.3% 감소하였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5. 상반기 자동차 수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

- 종전 최고치('14년 상(上), 252억 달러) 대비 100억 달러 이상 증가
- 특히 70% 이상 증가한 친환경차가 수출을 견인

올해 상반기('23.1~6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46.6% 증가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종전 최고인 '14년 상반기 수출액 252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자동차와 부품의 합산 수출액은 473억 달러로 지난 5.23일 '자동차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에서 밝힌 올해 자동차산업(자동차·부품) 수출액 800억 달러 달성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 하이브리드)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124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0.4% 높은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38.5만 대로 수출 차량의 4대 중 1대는 친환경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중에서 전기차(BEV)는 18.2만 대 수출되어 가장 큰 비중(47.4%)을 차지하였다.

올해 상반기 생산량 역시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공급이 정상화되면서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한 219.8만 대를 기록하였다. 상반기 생산량 200만 대를 회복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인 '19년 이후 4년 만이다.

한편, 상반기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10.7% 증가한 89.4만 대의 차량이 판매되었다. 이 중에서 국산차는 75.9만 대로 전년동기 대비 8.7% 증가했으나 수입차는 13.4만 대로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하였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시장 친환경차 판매량은 26.4만 대(총판매의 30%)이며 이중 하이브리드차는 17.7만 대 판매되어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66.9%)을 차지하였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

-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 최대 1년까지 연장

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행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수) 밝혔다.

이번 지원은 ❶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❷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❸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❶ (관세조사 유예) 이번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원칙적으로 연말(~12.31)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 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❷ (세정지원)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 변질된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 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❸ (특별통관 지원)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한다.

-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 [원칙]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 [연장] ‘1년 범위 내’ 연장 승인

-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피해기업의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100분의2 범위 내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금액

관세청은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7.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 UN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과 의존성 등 확인된 물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타젠’ 등 24종 물질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

마약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제66차 유엔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에타젠’ 등 4종입니다.

\*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국제 마약 통제협약 이행 감독 등 역할을 수행

향정신성의약품 지정을 추진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 ‘클로나졸람’ 등 4종과 식약처 평가결과 중추신경계 작용, 의존성 등이 확인된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 등 16종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마약류의 지정이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 방지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제협력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마약류를 지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http://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8. 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 인천(T2),김포공항에만 적용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에 확대
- ‘종이 납부고지서’를 ‘전자 납부고지서’로 대체, 모바일로 세금 납부

오는 8.1일(화)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과세대상 휴대품(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한 경우 자신의 모바일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기본 면세]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을 포함한 해외 취득물품의 합계액 800US\$ 이하[별도 면세] 술 2병(합산 2ℓ이하, 400US\$ 이하) / 궤련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1.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 운영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2곳에서만 운영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

8.1일(화)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과세물품 등을 신고하는 경우, ‘종이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 (공항) 김해, 제주, 청주, 대구, 무안, 양양 / \*\* (항구) 인천, 부산, 군산, 평택, 속초, 동해, 제주

2. 모바일 신고 후 세금 납부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

관세청은 기존에 운영 중인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하여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한다.

□ 기존에 입국 여행자가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8.1일(화)부터 입국 여행자가 모바일 앱(App)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한 경우, 앱(App)에서 생성된 쿼알(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App)을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서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9. 신규 수출기업 3천 개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출 초보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
-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진흥센터 내 상주 관세사가 1:1 맞춤형 집중 상담(컨설팅)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올 하반기에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를 표적화(타겟팅)하여 “먼저 찾아가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수출 초보 기업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정보 부족 또는 기업정보 유출 우려 등 막연한 두려움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진입장벽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신규 수출기업이 수출 초기 단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연간 신규 수출 진입기업(총 2만3천여 개사) 중 우리 중소기업의 전략 수출 분야인 섬유, 자동차, 식품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품목(HS코드\*)의 연간 수출액이 1만 달러 이상인 2,909개 기업을 표적화(타겟팅)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21~22류) 식품 및 음료, (61~62류) 섬유류, (87류)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전국적으로 분포된 신규 수출기업 2,909개사에 대해, 전국 18개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진흥센터의 상주 관세사가 1차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여부 파악부터 간단한 애로 해결까지 상담을 시행하고, 해당 기업이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등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법인을 통한 2차 맞춤형 집중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자유무역협정(FTA) 통상진흥센터는 수출 초보 기업들이 지속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DB화)를 시행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친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사항들을 외국과의 통상 교섭에도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지금까지 세계 국내총생산의 85%를 차지하는 59개국과 19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바, 자유무역협정 활용 경험이 없는 수출 초보 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수출경쟁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 전환의 계기(모멘텀)를 바탕으로 신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촉진을 통해 하반기에도 수출 확대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0.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

-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

-주요내용

1.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보정기간(신고납부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 시 관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을 확대\*

\* (현 행)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20%, (6개월~1년 6개월) 10%  
(개정안)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30%, (6개월~1년) 20%,  
(1년~1년 6개월) 10%

2.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관세법)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수출입물품 검사 시 부과하는 수수료\* 폐지

3.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관세법)

덤핑방지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서도 덤핑방지 관세를 동일하게 부과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에 있어 경미한 변경을 통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

4.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관세법)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포탈관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포탈관세액 등 공개\*

\* (현행) 체납 발생일부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만 공개

5.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관세특례법)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능력 등이 있다고 인정받아,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는 수출자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고의로 미제출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 처벌\* 근거 마련

\*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